

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5. 11. 9
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95. 11. 3
- 나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95. 11. 3
- 라. 상정 및 의결
 - 제4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
 -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: 95. 11. 7
 -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 : 95. 11. 7

2. 제안설명요지

- 가. 제안사유
 -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 대중문화 창달을 위하여 남성과 주부로 이원화된 합창단을 통합 설치·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 - 합창단 구성은 100인이내(안 제2조 제1항)
 - 합창단의 자격은 관내 거주자로서 음악에 소질과 취미가 있는 성인 남·여(안 제4조제2항)
 - 발표회는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며 정기 발표회는 연1회 개최(안 제8조)
- 다. 근거법령
 -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

3. 검토의견(보고자 : 전문위원 최영찬)

본 조례설치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달서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대중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합니다만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

는 달서구 합창단으로서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사료되지만 보다 기술적이고 질적인 예술의 진작을 위해서는 전문분야에 자격을 겸비한 단원을 발굴하므로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 됨.

4. 질의답변요지 (답변자 : 문화공보실장 김태규)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 예산 중 문화부문의 예산액은 얼마이며 • 합창단인원을 최소한 감축하여 • 예산을 절약할 수 없는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 본청 예산 중 문화(합창단)부분에 예산은 약1,000만원 정도 • 합창단운영에 따른 경비를 주로 음료수 및 다과 등으로 인원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사료됨.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재 합창단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가 타구청에도 제정된 곳이 있는지 여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구청에도 여성합창단을 설치하여 운영은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조례는 제정된 곳이 없음.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합창단 발표회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년도 발표회 실적은 두류축제, 달구벌축제 등이며 향후계획은 가을 음악회 등이 있음.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성합창단이 구 전체를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고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데 그 사유는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합창단 발족당시에는 그린맨션 거주자들 중심으로 발족하였으나 현재는 성당동, 성서동, 두류동, 본리동, 원배동 등으로 15개동 60여명이 고루 분포되어 있음.

5. 토론요지

- 합창단 설치 및 운영을 주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대중문화창달이 필요하나 빈약한 구 예산의 투자 순위차원에서 심사한 결과 불우이웃 및 영세민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지원이 우선적으로 판단되었음.

6. 심사결과 : 부결(반대7, 찬성4)

7. 소수의견

향토대중문화 창달을 위한 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의견